

의안번호	2218730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06.18.
추계번호	26G2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 등의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농업 등의 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조 2,102억원, 2032년 2,141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6조 9,162억원(연평균 1조 1,5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8년 368.4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1,842.0억원(연평균 368.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39.0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195.0억원(연평균 3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8년 233.8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1,169.0억원(연평균 23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는 2027년 17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85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7년 81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573억원(연평균 1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7년 1.6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10.8억원(연평균 1.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7년 4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8억원(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2027년 1조 1,218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6조 989억원(연평균 1조 1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2027년 495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2,795억원(연평균 46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7년 40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208억원(연평균 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인지세는 2027년 7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370.0억원(연평균 7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7년 83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64억원(연평균 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수협 명칭사용·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7년 88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40억원(연평균 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인지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합계	-12,102	-14,133	-13,852	-13,588	-13,345	-2,141	-69,162	-11,52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6조)	-	-368.4	-368.4	-368.4	-368.4	-368.4	-1,842.0	-307.0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7조)	-	-39.0	-39.0	-39.0	-39.0	-39.0	-195.0	-32.5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8조)	-	-233.8	-233.8	-233.8	-233.8	-233.8	-1,169.0	-194.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106조제1항 후단, 제111조제1항 제2호)	-17	-17	-17	-17	-17	-	-85	-17
농업 경영·작업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안 제106조제1항제3호)	-81	-95	-112	-131	-154	-	-573	-115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제 5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1.6	-2.2	-2.2	-2.2	-2.2	-0.5	-10.8	-1.8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안 제106조제1항제2호)	-4	-4	-4	-4	-4	-	-18	-4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5년 연장 (안 제106조의2제1항)	-11,218	-12,521	-12,220	-11,934	-11,664	-1,432	-60,989	-10,165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안 제106조의2제2항)	-495	-562	-559	-557	-555	-67	-2,795	-466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5년 연장 (제111조의5제1항)	-40	-41	-42	-42	-43	-	-208	-42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16조)	-74.0	-74.0	-74.0	-74.0	-74.0	-	-370.0	-61.7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 치세 면제 5년 연장 (제121조의23제10항)	-83	-88	-93	-98	-103	-	-464	-93
수협 명칭사용·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안 제121조의25제78항)	-88	-88	-88	-88	-88	-	-440	-88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2	안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3	안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4	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단축 특례(8년 이상 → 3년 이상)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	-
5	안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현행)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임업 조합원 및 그외 조합 저소득(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 <u>2028년말까지</u> 비과세(2029년 5% 및 2030년부터 9% 분리과세), 그 외의 경우 가입일 <u>2025년말까지</u> 비과세(2026년 5% 및 2027년부터 9% 분리과세) - (개정안)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임업 조합원 및 그외 조합 저소득(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 <u>2030년말까지</u> 비과세(2031년 5% 및 2032년부터 9% 분리과세), 그 외의 경우 가입일 <u>2030년말까지</u> 비과세(2031년 5% 및 2032년부터 9% 분리과세)	-
6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현행)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임업 조합원 및 그외 조합 저소득(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 <u>2028년말까지</u> 비과세(2029년 5% 및 2030년부터 9% 분리과세), 그 외의 경우 가입일 <u>2025년말까지</u> 비과세(2026년 5% 및 2027년부터 9% 분리과세) - (개정안)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임업 조합원 및 그외 조합 저소득(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 <u>2030년말까지</u> 비과세(2031년 5% 및 2032년부터 9% 분리과세), 그 외의 경우 가입일 <u>2030년말까지</u> 비과세(2031년 5% 및 2032년부터 9% 분리과세)	-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제1호 관련 부분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1조제1항(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면제대상 세목) 부가가치세(제106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제111조제1항제2호)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개정안) ~2031.12.31.(5년 연장)	-
8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2호	-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9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3호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10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4호의5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11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12호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12	안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항제1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13	안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항제2호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삭제	
14	제111조의5제1항(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감면액) 리터당 56원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개정안) ~2031.12.31.(5년 연장)	-
15	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16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항	-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17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7항 및 제8항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은행·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2	안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3	안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4	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	전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실적 중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경작기간이 3년 이상 8년 미만)를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세수효과를 추계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5	안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현행 제도 조세지출 실적 미집계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
6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7	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1조제1항(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
8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2호	×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학교 구내 급식용역 금액 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해 추계가 어려움
9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3호	○	—
10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4호의5	○	—
11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12호	○	—
12	안 제106조의2제1항(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	안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제1항제2호	○	-
14	제111조의5제1항(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
15	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
16	안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17	안 제121조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안 제66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8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32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
-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2021~202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최근 5년(2021~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368.4억원
 -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이 전환되어 법인세수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현재 관련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여 고려하지 않음

나. (안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8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32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

□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2021~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39.0억원

다. (안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정수기준에 따라 2028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32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

□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2021~202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최근 5년(2021~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233.8억원

○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이 전환되어 법인세수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현재 관련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여 고려하지 않음

라. (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단축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¹⁾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단축(8년 → 3년)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²⁾는 일반적으로 경작기간 8년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 3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1) 고령 농업인(65세 이상~79세 이하, 10년 이상 농업경영)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거나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2) 양도소득세 100% 감면(단, 동 특례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종합한도를 적용)

-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전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실적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경작기간이 3년 이상 8년 미만)를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세수효과를 추계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경작기간별 감면액도 구분할 수 없음
 - 참고로 자경농지(8년 이상 경작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에 대한 전체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체 감면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p
감면실적	12,435	16,323	20,459	16,482	10,664	9,033	6,563

주: p는 잠정치

자료: 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마. (안 제88조의 5 및 제89조의3)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및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 2026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제도 관련 조세지출 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제외
 - 현행 조합 출자금 비과세 및 예탁금 저율과세 제도는 조합원 및 저소득 준조합원에 한하여 2028년까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외 고소득 준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26년부터 시행
 - 개정안은 2025년말까지 시행되던 이전 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몰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로 5년 연장하고 2031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적용

바. (안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5년 연장

- 연장된 일몰기한을 고려하여 2027~2031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의 부가세인 교육세 감소분까지 추계

사. (안 제106조제1항제2호)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학교 구내 급식용역 금액 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해 추계가 어려움

아. (안 제106조제1항제3호) 농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

자. (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 (추계 방법) ‘난방용역비 × 부가가치율 × 세율 10%’로 추계
 - (면제 대상) 영구임대주택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받는 난방방식의 주택³⁾
 - (난방용역비) ‘대상 주택 수 × 1호당 평균 난방용역 공급가액’으로 추정
 - 난방용역비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집계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비로 환산해 활용
 - 주택 1호당 평균 공급가액은 임대주체·면적·지역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
 - 대상 주택 수 및 평균 난방용역비는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율)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되,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3) 가스 등 연료를 공급받아 직접 난방을 수행하는 개별난방 및 중앙난방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

차. (안 제106조제12호)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 동 제도의 최근 조세지출 실적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

카. (안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5년 연장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 최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⁴⁾,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활용

[표 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세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7,547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개별소비세	289	289	376	276	239	232	271
교육세	1,175	1,243	1,169	794	739	780	886
부가가치세	2,892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전체	11,903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면제액을 조정

- 매년 징수 기간(부가가치세: 분기, 그 외 세목: 월)별로 면제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

4) 최근 유류세 인하: ('18.11.6.~'19.5.6.) 15% 인하 → ('19.5.7.~8.31.) 7% 인하 → ('21.11.12.~'22.4.30.) 20% 인하 → ('22.5.1.~6.30.) 30% 인하 → ('22.7.1.~12.31.) 37% 인하 → ('23.1.1.~'24.6.30.) 경유 37%, 휘발유 25% 인하 → ('24.7.1.~10.31.) 경유 30%, 휘발유 20% 인하 → ('24.11.1.~'25.4.30.) 경유 23%, 휘발유 15% 인하 → ('25.5.1.~10.31.) 경유 15%, 휘발유 10% 인하 → ('25.11.1.~'26.3.26.) 경유 10%, 휘발유 7% 인하 → ('26.3.27.~7.31.) 경유 25%, 휘발유 15% 인하 등

타. (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

□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 최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활용

□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면제액을 조정

○ 매년 징수 기간(부가가치세: 분기, 그 외 세목: 월)별로 면제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

파. (안 제111조의5제1항)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5년 연장

□ 연장된 일몰기한을 고려하여 2027~2031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의 부가세인 교육세 감소분까지 추계

하. (안 제116조)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개정안에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31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거. (안 제121조의23)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련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31년까지 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 미반영

너. (안 제121조의25) 수협 명칭사용·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련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31년까지 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 미반영

3.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안 제66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제도개요)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한편, 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특례 및 이월과세 적용
 - 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및 그 외 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법인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해 식량작물재배업 배당소득 전액 및 그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면제,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5%의 저율과세 적용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 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적용기한: (현행) 2026. 12. 31. → (개정안) 2031. 12. 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감면실적은 2021년 387억원, 2025년 전망액 384억원 수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2021~202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2021~2023년 하락추세였으나, 2024년 및 2025년은 상승추세

[표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5년(전망)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¹⁾	연평균
전체 감면액	387	379	342	350	384	368.4
소득세	178	169	161	186	187	176.2
법인세	209	210	181	164	297	212.2

주: 1) 2025년 감면액은 전망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한편, 동 세액감면 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를 근거로 하여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 실적임을 감안할 필요
- (추계방법) 향후 법인·소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실적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고,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한 개정법률 시행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이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방식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현물출자 실적 등의 부재로 고려하지 않음
 - 최근 5년(2021~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368.4억원

[표 3]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 법인세 등,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영농조합법인 등의 법인·소득세 감면액	368.4	368.4	368.4	368.4	368.4

- (추계결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8년 368.4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1,842.0억원(연평균 368.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8~2032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6조)	-368.4	-368.4	-368.4	-368.4	-368.4	-1,842.0	-368.4

나. (안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제도개요) 영어조합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및 조합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영어조합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정 한도⁵⁾ 내에서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일정 한도⁶⁾ 내에서 면제, 초과분은 5% 세율로 분리과세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6. 12. 31. → (개정안) 2031. 12. 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감면실적은 2021년 29억원에서 2025년 51억원임

[표 5]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계	29	36	36	39	51
- 소득세	0.2	1	0.02	0	0
- 법인세	29	35	35	39	51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추계방법) 향후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 실적의 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영어조합법인 등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감면 수준(3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 2021~2025년간 연평균 감면액: 소득세 1억원, 법인세 38억원

[표 6] 개정안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8~2032년

(단위: 억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계	39	39	39	39	39
- 소득세	1	1	1	1	1
- 법인세	38	38	38	38	38

5) 현행 동법 시행령 기준, 사업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

(연근해·내수면어업 발생 소득) 3천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기타소득)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6) 현행 동법 시행령 기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한도

- (추계결과)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39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195.0억원(연평균 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연장의 세수효과: 2028~2032년, 소득세 및 법인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7조)	-39.0	-39.0	-39.0	-39.0	-39.0	-195.0	-39.0

다. (안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제도개요) 농업회사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한편, 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특례 및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 및 그 외 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법인세 면제 등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 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에 대하여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면제, 그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배제
 - 적용기한: (현행) 2026. 12. 31. → (개정안) 2031. 12. 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의 감면실적은 2021년 193억원, 2025년 전망액 234억원 수준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2021~202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2021년 대비 2022년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2024년까지 하락추세였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표 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5년(전망)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¹⁾	연평균
전체 감면액	193	278	240	224	234	233.8
소득세	4	5	5	4	6	4.8
법인세	189	272	235	220	228	228.8

주: 1) 2025년 감면액은 전망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한편, 동 세액감면 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를 근거로 하여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 실적임을 감안할 필요
- (추계방법) 향후 법인·소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실적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고,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한 개정법률 시행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이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방식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현물출자 실적 등의 부재로 고려하지 않음
 - 최근 5년(2021~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233.8억원

[표 9]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 법인세 등,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농업회사법인 등의 법인·소득세 감면액	233.8	233.8	233.8	233.8	233.8

- (추계결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8년 233.8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5년간 총 1,169.0억원(연평균 23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8~2032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8조)	-233.8	-233.8	-233.8	-233.8	-233.8	-1,169.0	-233.8

라. (안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5년 연장

(1) 감면실적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6억원, 2025년 21억원으로 전망

[표 1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합 계	19	14	15	16	21
부가가치세	4	5	5	5	6
교통·에너지·환경세	13	8	9	10	13
교육세	2	1	1	1	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및 결과

□ (추계방법)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계기간 동안 2021~2025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2025년은 전망)치인 17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

○ 조세지출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없음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평균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2025년 전망은 신고·진도비를 고려한 수치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7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85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106조제1항 후단, 제111조제1항제2호)	-17	-17	-17	-17	-17	-85	-17
부가가치세	-5	-5	-5	-5	-5	-25	-5
교통·에너지·환경세	-11	-11	-11	-11	-11	-53	-11
교육세	-1	-1	-1	-1	-1	-7	-1

아. (안 제106조제1항제3호) 농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1) 제도 개요 및 실적

□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보완 및 농어업법인 경영개선 목적에서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⁷⁾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임

- (위탁영농)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물재배 대행, 축산물 사육 행을 하는 법인 활동 농작업의 100% 위탁
- (농작물대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업의 일부(100% 미만)인 논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 수반 활동

□ 농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관련 농업법인 매출액은 2023년 2,094억원 수준이며 최근 3년간(2021~2023년) 증가 추세(연평균 증가율 17.5%)

- 다만, 면세사업자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 동 제도와 관련한 조세지출 실적이 집계되고 있지는 않음

[표 17]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현황: 2021~2023년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위탁영농·농작물대행 매출액	1,518	2,000	2,094	17.5%

주: 1. 「농업법인조사」(농림축산식품부) 상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농업법인 중 매출액 신고를 하였거나 유급종사자 1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법인조사 보고서」(2023년 기준), 2025.5

(2) 추계 방법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농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10%)’로 추계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매출액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17.5%)이 추계기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
 - 농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은 농업 부문 최근 3년 평균 수준(20.31%)이 추계기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상 ‘농업’[A01]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 수준 적용

[표 18]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 2022~2024년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
농업	20.49	18.96	21.49	20.31

자료: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1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573억원(연평균 1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동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428억원(연평균 86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45억원(연평균 29억원) 감소 예상됨

[표 19]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농업 경영·작업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안 제106조제1항제3호)	-81	-95	-112	-131	-154	-573	-115
- 부가가치세(74.7%)	-60	-71	-83	-98	-115	-428	-86
- 지방소비세(25.3%)	-20	-24	-28	-33	-39	-145	-29

바. (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 (주택 수) 난방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구임대주택 수는 7.3만호로 추정

- 전체 영구임대주택 수는 2022~2024년 연평균 22.3만 호로 집계
 - LH(주택관리공단 관리) 및 지자체·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을 모두 포함

[표 20] 전체 영구임대주택 수: 2022~2024년

(단위: 호)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전체 영구임대주택(A) ¹⁾	220,711	224,116	225,410	223,412

주: 1) 전국의 유형별(지역난방·중앙난방·개별난방) 및 임대주체별(LH 및 지자체·지방공사) 주택을 모두 포함하며, 재고주택 수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 LH 임대(주택관리공단 관리) 대상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지역난방 유형의 주택은 2022~2024년 연간 4.7만호로 전체 주택(14.5만호)의 32.8% 비중

[표 21]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수: 2022~2024년

(단위: 호, %)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지역난방 주택(B)	47,498	47,498	47,498	47,498
전체 주택(C) ¹⁾	144,691	144,691	144,691	144,691
지역난방 주택의 비율(D=B/C)	32.8	32.8	32.8	32.8

주: 1) 전체 주택은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유형을 모두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지역난방 주택 수를 7.3만호 수준으로 추정
 - ‘전체 영구임대주택 22.3만호 × 지역난방 주택 수 비율(32.8%, 주택관리공단 관리 주택 기준)’로 산출

□ (주택 1호당 난방용역비) 영구임대주택 1호당 난방용역비 공급가액은 24.4만원으로 추정

-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 1호당 평균 난방용역비 공급가액은 2022~2025년 연평균 24.4만원 수준

[표 22]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지역난방 유형)의 난방용역비: 2022~2025년
(단위: 호, 백만원, 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지역난방 주택 수(B)	47,498	47,498	47,498	47,508	47,501
난방용역비 공급가액(E)	10,834	13,367	10,991	11,194	11,597
주택 1호당 공급가액(F=B/E)	22.8	28.1	23.1	23.6	24.4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 (부가가치율) 난방용역 공급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22~2024년 연평균 12.11% 수준

[표 23]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현황

	2022	2023	2024	연평균
연료용 가스,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¹⁾	9.22	11.02	16.08	12.11

주: 1)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 (감면액)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감면액은 2027년 2.2억원 수준으로 추계

○ ‘대상 주택 수(7.3만호) × 주택 1호당 난방용역비(24.4만원) × 부가가치율(12.11%) × 세율(10%)’로 추정

[표 24]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시 감면액(귀속 기준):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감면액	2.2	2.2	2.2	2.2	2.2

□ (세수효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1.6억원 등 2027~2032년 6년 간 총 10.8억원(연평균 1.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4 징수, 차년도에 1/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조정
- 2027~2032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8.1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2.7억원 감소 예상

[표 2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시 세수효과(징수 기준): 2027~2032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전체 세수효과	-1.6	-2.2	-2.2	-2.2	-2.2	-0.5	-10.8	-1.8
- 국세(74.7%)	-1.2	-1.6	-1.6	-1.6	-1.6	-0.4	-8.1	-1.3
- 지방소비세(25.3%)	-0.4	-0.5	-0.5	-0.5	-0.5	-0.1	-2.7	-0.5

사. (안 제106조제12호)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2~2024년 연평균 4억원 수준

[표 26]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1~2023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연평균
조세지출액	4	4	3	4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4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8억원(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추계기간 최근의 조세지출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7~2031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14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5억원 감소 예상

[표 27]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12호)	-4	-4	-4	-4	-4	-18	-4
- 국세(74.7%)	-3	-3	-3	-3	-3	-14	-3
- 지방소비세(25.3%)	-1	-1	-1	-1	-1	-5	-1

아. (안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5년 연장

(1) 추계방법

-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로 2020~2025년 실적에 대한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정

[표 28]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5년

(단위: 천kl, 천ton,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휘발유	202	201	194	189	191	190	-1.2
경유	1,855	1,767	1,667	1,663	1,626	1,621	-2.7
중유	43	38	34	21	21	23	-11.7
윤활유	8	8	7	7	7	7	-3.4
LPG부탄	0.4	1	1	1	1	2	43.6
LPG프로판	14	16	17	16	17	19	6.1
등유	443	440	423	350	341	365	-3.8

주: 중유 공급량은 부생유 2호(개별소비세율 동일)를 포함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제공 자료(2026년 6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합산

- 추계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표 29] 현행 유종별 세율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A)	개별소비세 (B)	교육세 (C)	자동차세(주행분) (D)	부가가치세 (E)
휘발유	529원/L ¹⁾	—	A×15%	A×26%	(세전가격 +세세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등 ³⁾)×10%
경유	375원/L ¹⁾	—			
등유	—	63원/L ¹⁾	B×15%	—	
중유	—	17원/L		—	
윤활유	—	— ²⁾	—	—	
LPG부탄	—	275원/kg ¹⁾	B×15%	—	
LPG프로판	—	14원/kg ¹⁾	—	—	

주: 1) 현행 제도에 따라 추계기간 적용될 예정인 세율(탄력세율)을 반영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휘발유·경유·등유·중유의 경우 품질검사수수료 0.469원/L, 부탄(일반용)은 품질검사수수료 0.027원/kg 및 안전관리부담금 4.5원/kg, 판매부과금 62.28원/kg, 프로판(일반용)은 품질검사수수료 0.027원/kg 및 안전관리부담금 4.5원/kg(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을 반영

□ 부가가치세 추계 시,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⁸⁾ 최근 실적인 2020~2025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

[표 30]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5년

(단위: 원/L, 원/kg)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휘발유	397	638	980	837	816	763	739
경유	432	655	1,186	951	900	866	832
중유	451	606	895	786	816	772	721
LPG부탄	614	836	1,161	953	1,010	1,029	934
LPG프로판	588	803	1,119	947	971	990	903
등유	411	599	1,022	917	870	841	777

주: 유종은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일반용 부탄 및 일반용 프로판을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www.petronet.co.kr)

(2) 추계결과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5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감률(2020~2025년, 비용추계 전제 참고)을 반영하여 추정

8)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 ('18년) 69.66 ('19년) 63.53 ('20년) 42.29 ('21년) 69.41 ('22년) 96.41 ('23년) 82.10 ('24년) 79.58 ('25년) 69.36 ('26년 5월) 103.15

[표 31]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6~2031년

(단위: 천kl, 천ton)

유종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휘발유	188	185	183	181	179	176
경유	1,578	1,536	1,495	1,455	1,416	1,379
중유	21	18	16	14	13	11
윤활유	7	7	6	6	6	6
LPG부탄	3	5	7	10	14	20
LPG프로판	20	21	23	24	26	27
등유	352	338	326	313	301	290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휘발유 및 경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 ×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등유, 중유, LPG부탄 및 프로판 사용량 추계

× 세율(등유 63원/L, 중유 17원/L, 부탄 275원/kg, 프로판 14원/kg)

×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0.996, 개별소비세 0.999)

[표 32]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통·에너지·환경세	6,715	6,550	6,390	6,233	6,081
개별소비세	232	229	230	234	243

(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⁹⁾) × 15%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26%

[표 33]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육세	1,042	1,016	992	969	948
자동차세(주행분)	1,746	1,703	1,661	1,621	1,581

(다) 부가가치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¹⁰⁾ × 10% × 조정계수*
 - 휘발유, 경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주행분+품질검사수수료)×유종별 사용량 추계
 - 등유, 중유, LPG부탄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 등)×유종별 사용량 추계
 - LPG프로판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품질검사수수료 등)×사용량 추계
-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2020년 기준, 1.14) 적용

[표 34]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부가가치세	3,060	2,983	2,910	2,842	2,778

(라) 추계 결과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1,218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6조 989억원(연평균 1조 165억원) 감소 예상

9)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음

10)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표 3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징수):
2027~2032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6,155	-6,564	-6,403	-6,246	-6,093	-507	-31,968	-5,328
－ 개별소비세		-213	-230	-230	-233	-243	-20	-1,168	-195
－ 교육세		-955	-1,019	-994	-971	-950	-79	-4,968	-828
－ 자동차세(지방세)		-1,600	-1,707	-1,665	-1,624	-1,584	-132	-8,312	-1,385
－ 부가 가치세	국세(74.7%)	-1,714	-2,243	-2,188	-2,136	-2,087	-519	-10,886	-1,814
	지방소비세 (25.3%)	-581	-760	-741	-723	-707	-176	-3,687	-615
전체		-11,218	-12,521	-12,220	-11,934	-11,664	-1,432	-60,989	-10,165

타. (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삭제

(1) 추계방법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 2020~2025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

[표 36]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5년

(단위: 천kl,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경유	76	81	86	81	82	75	-0.2
중유	50	55	55	54	46	43	-3.0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표 37] 현행 유종별 세율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A)	개별소비세 (B)	교육세 (C)	자동차세(주행분) (D)	부가가치세 (E)
경유	375원/L ¹⁾	—	A×15%	A×26%	(세전가격 +세세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³⁾) ×10%
중유	—	17원/L	B×15%	—	
윤활유 ²⁾	—	—	—	—	

주: 1) 2026년 이후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은 탄력세율인 375원/L를 반영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석유제품은 0.469원/L

- 부가가치세 추계 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 최근 실적인 2020~2025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

[표 38]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5년

(단위: 원/L)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경유(선박용)	416	581	1,090	914	857	813	779
중유	451	606	895	786	816	772	721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

(2) 추계결과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추계기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5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2020~2025년)을 반영하여 추정

[표 3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6~2031년

(단위: 천kl)

유종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경유	75	75	75	75	74	74
중유	42	40	39	38	37	36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경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375원/L) ×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중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17원/L) ×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1.083, 개별소비세 0.822)

[표 40]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통·에너지·환경세	304	303	303	302	301
개별소비세	6	5	5	5	5

(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 × 15%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26%

[표 41]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육세	46	46	46	46	46
자동차세(주행분)	79	79	79	79	78

(다) 부가가치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¹¹⁾ × 10% × 조정계수*
 - 경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품질검사수수료)×
경유 공급량 추계
 - 중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 중유 공급량 추계
-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2020년 기준, 1.028) 적용

[표 42]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부가가치세	128	127	126	125	124

(라) 추계 결과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6년 495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2,795억원(연평균 466억원) 감소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11)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표 43]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징수):
2027~2032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279	-304	-303	-302	-302	-25	-1,514	-252
- 개별소비세	-5	-5	-5	-5	-5	-0.4	-27	-4
- 교육세	-43	-46	-46	-46	-46	-4	-231	-39
- 자동차세(지방세)	-72	-79	-79	-79	-78	-7	-394	-66
- 부가 가세	국세, 74.7%	-72	-95	-94	-93	-93	-23	-470
	지방소비세, 25.3%	-24	-32	-32	-32	-31	-8	-159
전 체	-495	-562	-559	-557	-555	-67	-2,795	-466

차 (안 제111조의5제1항)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5년 연장

(1) 감면실적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33억원, 2025년은 33억원으로 전망

[표 4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합 계	19	30	32	33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7	26	28	29	29
교육세	3	4	4	4	4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추계방법) 한국해운조합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대상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량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세액감면 대상 연안화물선
용 경유 공급량을 추정

- 2025년 이후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은 2023~2025년 연평균 증가율(2.3%)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표 45] 한국해운조합 세액감면 대상 경유(MGO) 공급 현황

(단위: kl)

구 분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공급량	51,074	52,573	53,473	2.3%

자료: 한국해운조합

-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 추정치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단가(56원/L)을 곱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을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인 교육세와 각각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액까지 함께 추계
 -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부가가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에 10% 부과

[표 46] 추계기간 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kl,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 (A)	55,986	57,285	58,616	59,977	61,369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 ($B=A \times 56 \text{원/L}$)	31	32	33	34	34
교육세 감면액 ($C=B \times 15\%$)	5	5	5	5	5
부가가치세 감면액 ($[(B+C) \times 10\%]$)	4	4	4	4	4

(3) 추계결과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40억원 등 2027~2031년까지 5년간 총 208억원(연평균 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제111조의5제1항)	-40	-41	-42	-42	-43	-208	-42
교통·에너지·환경세	-31	-32	-33	-34	-34	-164	-33
교육세	-5	-5	-5	-5	-5	-25	-5
부가가치세	-4	-4	-4	-4	-4	-19	-4

카. (안 제116조)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제도개요) 농어민 소득 기반 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적용기한: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

[표 11] 개정안의 인지세 면제 대상 문서

구분	수혜자	인지세 면제 대상문서	비고
제5호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원	해당 조합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용자한도 1억원
제6호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원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 명의의 예금·적금증서·통장	어린이예금통장 포함
제7호	-	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제9호	-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및 건축자금 외상구입 관련 서류	
제11호	-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상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74.0억원 수준

-2020~2021년은 상승추세였으나, 2023년까지 하락하였고, 2024년은 다시 증가

[표 12]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인지세	92.0	116.0	46.0	24.0	92.0	74.0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추계방법)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실적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뚜렷한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감면 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감면실적: 74.0억원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인지세는 2027년 74.0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370.0억원 (연평균 7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인지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16조) (안 제116조)	-74.0	-74.0	-74.0	-74.0	-74.0	-370.0	-74.0

타. (안 제121조의23)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1) 제도 개요 및 실적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동 조합중앙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된 법인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

- 기존 농협중앙회는 금융, 농업경제, 축산경제, 교육지원 등 4개 분야가 한 조직 내에 공존하였으나, 2012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농업협동조합법」 '11년 3월 개정 및 '12년 3월 시행)¹²⁾
-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2012년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 농협은행이 계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까지 면세범위가 확대되어 시행

□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제공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

12)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5) 농협·수협중앙회에 대한 과세특례』), 국회예산정책처(2020,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치세 면제 실적은 2020년 56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증가 추세
(연평균 5.7%)

[표 51]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조세지출실적	56	57	59	69	70	5.7

자료: 기획재정부

2) 추계 방법

- 농협 구조개편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 및 자회사에 제공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에 따른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2020~2024년) 조세지출 연평균 증감률(5.7%)을 적용하여 추계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3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64억원(연평균 93억원) 감소
 - 동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347억원(연평균 69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17억원(연평균 23억원) 감소 예상

[표 52]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안 제121조의23제10항)	-83	-88	-93	-98	-103	-464	-93
- 부가가치세(74.7%)	-62	-65	-69	-73	-77	-347	-69
- 지방소비세(25.3%)	-21	-22	-23	-25	-26	-117	-23

파. (안 제121조의25) 수협 명칭사용·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수협중앙회 분할 과세특례 제도는 수협중앙회 물적분할¹³⁾에 대한 세제

13)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던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바

지원 및 어민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신설됨

- (명칭사용용역) 수협중앙회는 경제·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조달 목적에서 동 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명칭사용료 부과¹⁴⁾
- (전산용역) 수협은행이 수협 조합 및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협 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수협중앙회 분할 과세특례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69억원 실적을 기록하였고 2025년은 88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표 53] 수협중앙회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¹⁾
부가가치세	50	61	72	69	88

주: 1) 정부 전망액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동 제도의 최근 조세지출 수준(2025년 88억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수협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8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40억원(연평균 88억원)

젤Ⅲ)을 기존 협동조합체제로는 충족하기 어려웠던바, 2016년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그 자본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동 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 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2016. 12. 1.] ‘제6장 제4절의2 수협은행’ 관련 조항 신설),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동법 제167조 및 부칙 제8조 신설).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7~2031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329억원(연평균 66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11억원(연평균 22억원) 감소 예상

[표 5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수협 명칭사용·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21조의25제7·8항)	-88	-88	-88	-88	-88	-440	-88
- 부가가치세(74.7%)	-66	-66	-66	-66	-66	-329	-66
- 지방소비세(25.3%)	-22	-22	-22	-22	-22	-111	-2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박성은	
	이정훈	
	신홍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